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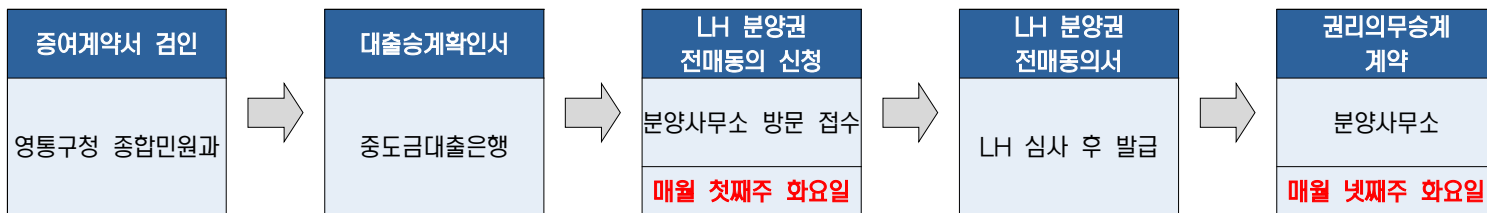
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(A1BL) 및 파인베르(A2BL) 분양권 배우자증여 전매(부부공동명의) 안내문

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및 파인베르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8년입니다.

다만, 주택법시행령 제73조(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) 제④항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분양권 전매동의서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. **단, LH에서 배우자 증여 전매동의서 발급 이후, 증여취소 또는 재증여에 따른 분양권 전매동의서 추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**

- 방문기간 : **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절차에 따라 [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]시와 [권리의무승계 계약]시 총 2회 분양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.**
[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 : 매월 첫째주 화요일(10월 4일, ...) / 권리의무승계 계약 : 매월 넷째주 화요일 (10월 25일, ...)]
- 계약자를 대신하여 당사에서 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접수→ LH 제출→ LH 분양권 전매동의서 수령예정이며, 이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.
- 당일예약 및 미예약시 방문 불가하며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지정된 방문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 구비서류와 권리의무승계 계약 시의 구비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.

1. 진행절차



2. 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

- 1) 장 소 : 영통 푸르지오 분양사무소
- 2) 구비서류 :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] 및 [분양권 전매동의서] → [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] 내 확인자(분양자)란에 승대우건설 인감 날인 ※ 홈페이지 내에서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■ 검인 된 증여계약서 사본 → 검인 문의 :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(031-228-8388) ■ 아파트공급,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원본 일체 ■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 →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→ 주민번호 전체 	
양도인 (계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감도장 ■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 ■ 매도용 인감증명서[본인발급 /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]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[본인방문 필수] 1부
양수인 (계약자 배우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감도장 ■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 ■ 일반 인감증명서[본인발급]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[본인방문 필수] 1부

※ LH전매동의서 신청 접수 시 반드시 양도인 본인내방(대리인 및 양수인 불가)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※ 전매동의 신청 후 LH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3. 권리의무승계 계약

- 1) 장 소 : 영통 푸르지오 분양사무소
- 2) 구비서류 :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분양권 전매동의서] ■ 대출승계확인서(대출은행에서 발급) 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→ 주민번호 전체 ■ 검인 된 증여계약서 사본 ■ 아파트공급,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원본 일체 	
양도인 (계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감도장 ■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 ■ 매도용 인감증명서[본인발급 /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]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[본인방문 필수] 1부
양수인 (계약자 배우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감도장 ■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 ■ 일반 인감증명서[본인발급]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[본인방문 필수] 1부

※ 권리의무승계 계약 시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 내방(대리인 불가)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미비 시 권리의무승계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배우자증여 시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검인된 증여계약서 원본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꼭 필요하니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※ 중도금 연체, 총 분양가의 90% 이상 분양금 납부 및 잔금 완납 시 배우자 증여가 불가합니다.